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2나119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2나119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3293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금호, 최현욱

변론 종결 2022. 9. 20.

판결 선고 2022. 11.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3293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75,118,253원 및 그중 62,179,221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8%, 그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2%, 12,93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제1심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제1심공동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바, 당사자들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A, B 부분을 제외하고, 제6면 제17행 이하의 「2) 어음금 채권 :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분을 삭제하고(어음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18437 판결 등 참조).

나) 을다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A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마련 과정에서 적금 등을 중도해지하거나 차용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가 선의라고 볼 여지는 있다.

(1) 피고는 2020. 8. 21. M저축(2015. 7. 2. 신규) 및 N적금(2019. 2. 20. 신규)을 중도해지하여 각 6,446,730원, 5,722,819원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중도해지 직전 잔고는 '9,496,761원'이다).

(2) 피고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은행 계좌의 연금금액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O단체에서 82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외에 자녀, 지인들에게서 차용하였다.

(3) 피고는 2020. 9. 25. P은행에서 3억 원을 담보대출받아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즉 피고는 2020. 9. 28. 종전 D에 2억 6,4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J에게서 추가로 1억 1,900만 원을 차용하여 H에 152,340,655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4) 피고는 2020. 10. 9. 종전 소유하던 아파트(서울 구로구 Q아파트 R호)를 4억 6,500만 원에 처분하고, J에게 2020. 11. 10. 1,000만 원, 2020. 11. 27.(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 1억 원을 변제하고, 2020. 11. 27. S, T에게 각 500만 원, 800만 원을 변제하고, 2020. 10. 26. O단체 대출금 820만 원을 변제하고, 2020. 9. 20.부터 2021. 4. 20.까지 U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그러나 아래 각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가 B, A 부부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거액을 차용한 J와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피고가 B, A 부부의 사업 부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J에게서 거액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A이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 부분이 J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B, A 부부는 K(대표 A)(을다 제3호증)과 G 주식회사(대표이사 B)(갑 제2호증의 7)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들 사업체는 위 부부가 주식회사 L(대표이사 J, 이하 'L')에게서 사업장을 임차하여(보증금 2,200만 원, 월 270만 원) 운영한 것이고(갑 제8호증), 이 사건 이전부터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J로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을다 제8, 9호증).¹⁾ (2) B, A 부부는 V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W호에 거주하였다(을다 제1호증의 1). 피고는 L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B, A 부부의 사업체 및 L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식대를 받아왔다(갑 제5호증).

(3) 피고는 2020. 8. 26. L 측에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잔금 1억 9,000만 원의 마련에 총당하였고, 이 사건 매매 완료 이후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J에게서 2020. 9. 25. 7,500만 원, 2020. 9. 28. 4,4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을 제11호증). 그러나 피고와 J는 담보 없이 거액의 거래를 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탄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는 2020. 8. 27. 잔금 1억 9,000만 원을 A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런데 A은 당일 4,000만 원을 현금인출하여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을다 제13호증), 1억 500만 원을 B 계좌에 송금하였다(갑 제6호증). B은 2020. 8. 28. 4,000만 원을 현금인출하여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J 변제에 사용하였다(을다 제8호증). 즉, 잔금 대부분이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5) 피고 대리인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B이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소 저렴하게 갑작스럽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 제11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

「함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4,744,565원 [= 62,179,253 + 62,179,221 × (0.08 × 82/365 + 0.12 × 560/365)]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74,744,5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74,744,5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재판장판사강영훈

판사노태현

판사김창현

별지

- 1) 즉 J 또는 L이 B에게 2019. 11. 27. 5,000만 원, 2020. 3. 31. 5,000만 원, 2020. 5. 4. 5,000만 원, 2020. 5. 20. 5,000만 원, 2020. 6. 1. 5,500만 원, 2020. 6. 15. 2,700만 원, 2020. 6. 22. 6,000만 원, 2020. 6. 25. 2,000만 원, 2020. 6. 30. 2,000만 원, 2020. 7. 10. 820만 원, 2020. 7. 13. 3,000만 원, 2020. 7. 20. 5,500만 원, 2020. 8. 3. 3,500만 원, 2020. 8. 10. 5,500만 원, 2020. 8. 20. 3,530만 원, 2020. 8. 31.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2) 대위변제일(2020. 12. 18.)부터 채무자인 A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2021. 3. 9.)까지 82일간 약정 상의 연 8%에 해당하는 1,117,522원(원 미만 버림), 그다음 날부터 당시 변론종결일(2022. 9. 20.)까지 560일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에 해당하는 11,447,790원